

의안번호	2218187
의 퇴 인	이종욱 의원
회 답 일	2026. 4. 14.
추 계 번호	26A2058
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11.1억원, 2031년 1.1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4.4억원(연평균 2.9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(안 제11조의5 신설)	11.1	—	1.1	1.1	1.1	14.4	2.9

주: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5 (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)	○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1조의5 (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은 유사 사업 평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며, 운영·유지비용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(1년) 만료 이후부터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-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조달청 공고 제안요청서상의 사업금액 기준으로 하며, 구축 비용은 2027년 단년도 발생으로 가정
 - 운영에 따른 유지비용은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근거한 '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'¹⁾에 따라 산정
 - 동 가이드에서 제시한 유지관리비 요율 범위(10~15%) 중 최소 기준인 10%를 적용하여 총구축비의 10%로 산정
 - 통합관리시스템 운영·유지보수비용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7년 이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(1년)을 거쳐 2029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²⁾
- 개정안 부칙(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)과 법안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1.1억원으로 추계됨
 -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조달청 공고 제안요청서 기준으로 유사 사업의 평균 사업비를 적용하였으며, 유사 사업 3건의 평균은 11.1억원
 -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중 2027년 1개년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1)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는 공공 SW사업의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할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'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'를 제정·고시하여 공공기관이 사업비를 산정할 때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

2) 기획재정부의 「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에 따르면 S/W의 도입 후 1년 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수하도록 함

[표 2] 개정안과 유사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(예산)비 현황: 조달청 공고기준
(단위: 억원)

사업명	발주처 (제안일자)	수행기간	금액
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통합·구축사업	한국지역정보개발원 (2025.6)	계약 후부터 335일 이내	8.8
정보보안통합포탈 구축 사업	한국주택금융공사 (2025.10.)	계약일부터 10개월	9.7
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(K-NASS 3차)구축사업	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(2026.2.)	계약후 300일	14.8
평균			11.1

자료: 조달청 조달데이터허브(기관별 제안요청서)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·유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2029년부터 2031년까지 3년간 총 3.3억원으로 추계됨

- 통합관리시스템 운영·유지보수비용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7년 이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(1년)을 거쳐 2029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- 운영·유지비용은 구축비용의 10%를 적용하여 연간 1.1억원으로 산정

[표 3]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·유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통합관리시스템 운영·유지비	-	-	1.1	1.1	1.1	3.3	-

□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·유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4.4억원(연평균 2.9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·유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·유지비용	11.1	-	1.1	1.1	1.1	14.4	2.9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